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생·학부모 대상 학칙 내용 안내 의무 부과〉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53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생·학부모 대상 학칙 내용 안내 의무 부과	2
2. 개정안 부칙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2. 6.

3. 회 부 일 : 2026. 2.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Ⅲ. 검토의견

1. 학생·학부모 대상 학칙 내용 안내 의무 부과(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장에게 학칙의 내용을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내용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 규칙) ① (생략)	제8조(학교 규칙)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학교의 장은 학칙의 내용을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내용을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u>
<u>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u> <u>-----정하고, 제2항에</u>

제10조(수업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u>따른 안내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u> 제10조(수업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시·도의</u>----- ----- ----- -----.
--	---

나. 검토의견

- ☐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학교장에게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학

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¹⁾,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의 경우 공시 횟수 및 시기를 “수시”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규칙의 경우 연중 공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²⁾.

□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학칙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장은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³⁾.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2. 11.>

초·중등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제외)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수시	수시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 1. 29.>

③ <생략>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와 같이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학칙에 대한 안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칙의 내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마련된 것임.

□ 개정안과 같이 학교장에게 학칙의 내용을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도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내용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학칙 안내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공시 시기를 현행 “수시”와 더불어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을 연중 게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개정 절차 등은 제·개정 시 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안내를 기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낮고 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⁴⁾.

4) 대구교육청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알리미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칙을 상시 공개하고 있고, 학칙 제·개정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칙 공포(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발송, 정보공시) 절차가 있는바 신중 검토 의견임.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또는 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⁵⁾
- ☐ 개정안의 경우 학교장에게 학칙에 대한 안내의무를 부과하면서, 안내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5)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유예기간을 충분히 둘 필요가 있음⁶⁾.

「관광진흥법」 부 칙 <제19246호, 2023.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③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186

6)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822